

◎ 상주시 공고 제2015- 792호

「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9월 30일

상 주 시



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가.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할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)
- 다. 위원 수당 등 기타사항(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)

3. 의견 제출

이 제정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0일까지 상주시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hychoi68@korea.kr
- 2) 주소 : (우37211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(남성동) 사회복지과장
- 3) 팩스 : 054-537-65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사회복지과 (전화 : 054-537-732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 (www.sangju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